

# Q & A

안전인증소식

##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인증기관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Answer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라 함은 정부간 MRA(상호인정협정)가 체결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의미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 싱가포르만 있음. 또한 '06.12월 싱가포르와 MRA가 체결되었으나 MRA이행을 위해 대상품목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시점 ('07년 12월 현재)에서 동법 제5조에 해당되는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은 없음.

Question

기준 외 전선제품에 대한 인증대상 여부?

A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1999.9 전면 개정하여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IEC)에 부합화 하고, 시행시기를 관계기관, 단체(전선조합 등), 업계의 의견을 들어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2006. 7. 1부터는 완전히 현행기준(IEC 기준)에 맞는 제품만을 생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현행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고 제품에 대한 표시 사항도 개별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함.

